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일부개정법률안
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이재관 · 이정문 · 윤준병
문진석 · 황명선 · 김영환
권칠승 · 박정현 · 박용갑
조정식 · 송재봉 · 장종태
서삼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
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,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
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
모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사업은 단일 지자체를 중심
으로 한 신기술 또는 개별기업 제품 위주로, 공간자원의 제약으로 인
해 산업구조 전환 및 시장 창출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
있음.

또한, 규제개선 이행력 확보 측면에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단계에서
부터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·관리하고 이후 후속 법령 정비와의 연계
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음.

이에 공급망 내 복합 규제 해소를 도모하고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 활성화 등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가능한 공동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규제합리화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(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78조제1항).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의2(규제자유특구의 공동지정신청 등) ① 비수도권 시·도지사 등이 제72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에 포함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정보, 정책동향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·지원할 수 있다.

③ 비수도권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규제자유특구 공동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고, 그 밖의 규제자유특구 공동지정신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한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관리·운영,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상호협약에 포함될 세부 내용 및 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78조제1항제4호 중 “사항”을 “사항(규제자유특구 지정 시의 법령정비 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법령 미정비 과제의 현황 점검 및 후속대응 등 규제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72조의2(규제자유특구의 공동 지정신청 등) ① 비수도권 시 · 도지사등이 제72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 · 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수도권 시 · 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에 포함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정보, 정책 동향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 ·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비수도권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의 규제자유특구 공동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고, 그 밖의 규제자유특구 공동지정신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</u></p>

제78조(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)

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

<신설>

- 5. ~ 11. (생략)
- ②·③ (생략)

④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한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은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관리·운영,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상호협약에 포함될 세부 내용 및 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78조(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)

① -----

-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

--사항(규제자유특구 지정 시의 법령정비 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4의2. 법령 미정비 과제의 현황 점검 및 후속대응 등 규제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

- 5. ~ 11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